#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14-직인-00001 학생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피 해 자 ○○고등학교 학생 ○○○, ○○○, ○○○

피조사자 ○○고등학교 교사 ○○○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고등학교 교사 ○○○에 대하여 징계 및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 하고, ○○고등학교 교사 ○○○, 보건교사 ○○○, 교사 ○○○ 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각 권고합니다.

나. 또한, 전라북도 각급 학교에 대하여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 2. ○○고등학교장에게,

교사,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 유

# I. 직권조사 개요

#### 1. 직권조사 실시 배경과 목적

2014. 10. 27.(월) 16:00경, ○○고등학교 2학년 교무실에서 교사가 칼(식칼)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체벌하고, 이로 인해 학생 여러 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구제신청이 없이 언론에 보도되어 인지하게 된 사안이지만, 교사가 체벌의 도구로 칼(식칼)을 사용하여 학생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것은 중대하고 심각한 학생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점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학생인권교육센터"라 한다)는 직권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 사안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였는지, 체벌을 하였다면 체벌 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였는지, 체벌로 인해 학생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체벌 이후 발생한 학생의 피해에 대해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이를통하여 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판단하였습니다.

## 2. 직권조사의 방법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14. 11. 3.(월) 위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고, 같은 달 5.(수) 피해 학생들에 대한 면담조사 및 2학년 일부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달 6.(목) 참고인 등 관련자 면담

조사, 같은 달 14.(금) 피조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각 실시하였습니다.

## Ⅱ.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 1. 관련규정

- 가. 「세계인권선언」 제26조
- 나. 「대한민국 헌법」제10조, 제12조
- 다. 「아동권리협약」 제19조
- 라. 「교육기본법」 제12조
- 마. 「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8조의4
-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3조, 제9조, 제45조, 제49조
- 아.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46조

##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 가. 피조사자의 주장

학생체벌과 관련된 연수를 받은 바 있고, 교직원 회의에서 체벌과 관련하여 전달받은 사항을 기재해 두는 등 체벌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XL파이프를 이용하여 학생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한 사실이 있으나, 금년 3~4월 이후에는 체벌을 하지 않고 있다.

2014. 10. 27.(월) 직원들 다과준비를 위해 교무실에서 과도로 단감

을 깎고 있던 중, '바둑을 두다가 걸렸다'는 학생들이 내려 와서, 감을 깎던 과도로 학생들의 장딴지를 각 1회 때렸고, 다시 위 학생들에게 '교실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장딴지를 각 1회 툭 쳤다.

체벌에 사용한 칼은 과일 깎는 용도로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과도' 라고 표현하였고, 이를 '식칼'이라는 개념과 연결하고 싶지 않다.

체벌에 사용한 칼은 2014. 10. 27. 24:00경, 퇴근하던 중에 학교 외부에 버렸는데, 정확한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

## 나. 피해자들의 주장(학생 000, 000, 000, 000)

2014. 10. 27.(월) 16:00경 자율학습 중에, 2학년 A반 교실(4층)에서 바둑을 두다가 교사 ○○○에게 적발되어, 위 ○○○이 "2학년 교무실(3층)로 가라"고 하여 교무실에 갔는데, 그 곳에서 피조사자가 식칼로 감을 깎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바둑을 두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야기를 위 ○○○으로 부터 들은 피조사자가, "대"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의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왼쪽 팔 부위를 각 2~3회 때렸고, 식칼의 방향을 돌려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왼쪽 허벅지를 각 2회 때렸 다.

위와 같은 체벌로 인해 학생 ○○○, ○○○은 왼쪽 팔과 허벅지부위에 멍이 들었고, 학생 ○○○은 허벅지에 상처가 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교실에서 확인하고, 양호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보건교사 ○○○이 위 ○○○에게 "상처가 벌어질 수 있으니 꿰매는 게좋겠다"고 하였다.

피조사자가 위 ○○○을 학교 인근의 ○○정형외과로 데리고 갔고, 위 ○○○은 오른쪽 허벅지의 베인 상처를 5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았으며, 2014. 11. 5.(수) 해당 상처의 실밥을 풀었다.

평소 피조사자는 '3종 세트'라고 불리는 보일러 XL파이프로 된 체 벌도구를 크기별로 3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학생들에게 무릎을 꿇고 뒤로 의자에 앉게 한 후 위 도구를 사용하여 발바닥을 체벌하여 왔 다.

#### 다. 참고인들의 주장

#### 1) 교사 〇〇〇의 주장

2014. 10. 27.(월) 16:00경, 자율학습 지도를 하는데, 2학년 A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바둑을 두는 학생이 있어서, 그학생들에게 교무실로 내려가 있으라고 지시하고 3~4분 뒤 교무실에 갔는데, 피조사자가 칼등으로 학생들의 허벅지쪽을 장난식으로 툭툭친 것을 보았다.

당시 상황이 체벌이라고 느꼈다면 당연히 말렸을 것인데, 장난식으로 하는 것이어서 말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2) 보건교사 ○○○의 주장

2014. 10. 27.(월) 16:30경 학생 ○○○이 보건실에 방문하였고, "칼로 베었는데, 선생님이 때려서 베었다"라고 말하여, 깊은 상처는 아니나, "벌어 질 수도 있어 보기에 좋지 않으니 병원에 가서 꿰매는 게 좋겠다"며 소독하고 드레싱을 하였다.

피조사자에게 '학생을 병원에 보내라'는 말을 하려고 전화하였는데, 다른 선생님이 "○ 선생님이 ○○○ 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라고 하여 안심하였다.

평소 호흡곤란, 경련 등 심각한 경우에만 학교장에 보고하고 있고, 당시 학생 ○○○은 경미한 상태라서 보고하지 않았다.

#### 3) 2학년 A반 담임교사 ○○○의 주장

2014. 10. 27.(월) 16:00경(8교시), 학부모상담실에서 신입생 입학과 관련된 회의가 있어 참석 중이었고, 9교시가 지나서 피조사자와 학생 들 사이에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10교시 보충수업을 진 행해야 해서 2학년 A반 교실에 갈 수 없었다.

2014. 10. 28.(화) 학생들에게 물어보아 사항을 파악하였고, 학생 ○○○의 상처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싫다고 하여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 기록 시, '장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칼을 이용하여 체벌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난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하였다.

## 4) 학생인권교육부장 ○○○의 주장

2014. 10. 28.(화) 16:00경, 학교담당 경찰관 ○○○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안을 인지하였고, 2학년 A반 담임 ○○○에게 사안을 확인후, 교감·교장선생님에게 보고했다. 같은 날 17:30경,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피조사자와 함께 호출되어 "왜 보고를 하지 않았나?"라고 꾸중

을 들었고, 같은 달 29.(수) 오전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보고체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확보된 진술서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준비하였고, 2014. 11. 3.(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5) 교감 ㅇㅇㅇ의 주장

2014. 10. 28.(화) 16:00경, 학생부장으로부터 사안에 대하여 전해들어 해당 사안을 인지하였고, 교장선생님께 보고 한 후, 같은 날 16:40경,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부장(학생인권교육부장)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학생과 학부모(사과포함)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2014. 10. 29.(수) 오전, 학교에서 경찰관과 면담을 하였고, 오후에는 경찰관과 이 사건 학생들이 면담을 하였다. 이후 교장선생님도 학생들과 면담하였다.

2014. 10. 30.(목) ○○○교육지원청에 사안보고를 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다.

## 3. 인정사실

피조사자의 경위서 및 문답서, 피해자(○○○, ○○○, ○○○, ○○○, ○○○)들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 참고인(교감 ○○○, 학생인권교육부장 ○○○, 보건교사 ○○○, 교사 ○○○, 2-A담임 ○○○)들의 각확인서, 학교폭력사안보고, 교무회의 지시/전달사항, ○○○의 진료기

록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2014. 10. 27.(월) 16:00 8교시 자율학습 중, 교사 ○○○이 자율학습을 지도하면서, 2학년 A반 교실(4층)에서 학생 ○○○과 ○○○가바둑을 두고, ○○○, ○○○, ○○○(체벌사건 외의 자)이 구경하는 것을 적발하여, 위 학생들에게 2학년 교무실(3층)에 내려가 있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2학년 교무실(3층)에는 피조사자가 식칼로 단감을 깎고 있 었는데, 학생 ○○○ 외 3명의 학생들이 교무실에 들어오자 위 학생 들을 쳐다보았고, 학생들이 "바둑 두다 걸렸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 니다. 피조사자는 일어서서 학생들에게 "대"라고 하고, 오른팔에 들고 있던 식칼의 칼등부분으로 학생들의 왼팔 상완부위를 각 2대씩 때리 고, 이어 칼의 방향을 돌려 칼날부분으로 뒤편에서 왼쪽허벅지를 각 2대씩 때린 사실이 있습니다. 피조사자는 체벌에 사용한 칼이 '과도' 라고 주장하지만, 피조사자가 문답 시 제출한 칼의 모양에 대한 그림, 피해 학생들의 칼의 모양에 대한 그림 및 주장, 참고인 교사 〇〇〇 의 칼의 모양에 대한 그림, 피해 학생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 합하여 살펴보면 피조사자가 길이 25cm 정도의 '식칼'을 이용하여 체 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조사자는 앉아서 칼등으로 장딴지 를 1회 때리고 칼날로 다시 장딴지를 1회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학생들 중 일부는 멍든 부위가 팔뚝에 있고, 이들 피해학생 중 1명은 키가 192cm가량 되는데, 앉은 상태에서 팔 상완부위를 때리는 것은 다소 억지스런 동작이고 피해 학생들이 피조사자가 그런 동작을 했다 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조사자가 일어서서 때렸고,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왼팔 상완부위와 허벅지를 때린 것으로 보입니다.

피조사자가 칼날부위로 허벅지를 때리는 과정에서, 학생 ○○○은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4cm가량 베이는 상처를 입어 양호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피조사자는 학생 ○○○을 학교 인근의 ○○정형외과로 데리고 가서 상처 부위를 5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학생 ○○○은 2014. 10. 27.(월)~ 11. 5.(수) 총 5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4. 10. 27.(월) 16:00경, ○○고등학교 2학년 교무실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조사자를 비롯하여 상황을 목격한 교사 ○○○, 보건교사 ○○○, 담임교사 ○○○ 등은 ○○고등학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2014. 10. 28.(화) 16:00경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학교 담당경찰관 ○○○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위 학교 학생인권교육부장 ○○○이 이를 인지하고 학교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2014. 10. 29.(수) 위 학교에서, 경찰관 ○○○과 피해학생 면담, 학교장과 피해학생 면담이 이루어졌고, 같은 달 30. 위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사안보고(학교폭력)를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11. 3. 위학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그 결과 피조사자는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으나, 위 학교는 피조사자에 대한 징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밖에도 피조사자는 2014. 3.~4.경까지 학생들에게 의자에 뒤돌

아 앉도록 한 후 산업용 XL파이프를 이용하여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2014. 3. 31.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고등학교는 교무회의 시 '학생인권조례에 맞춘 학생지도방식 적극 반영할 것' 등과 같은 체벌 금지와 관련한 사항을 총 8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 4. 판단

「세계인권선언」제26조 제2항은,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선언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등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입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체벌은 신체와 정신에 고통을 가함으로써 학생의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율성을 존중하지않으며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지않는다는 점에서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벌이 신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체벌을 가하는 자에 대한 체벌을 받는 자의 복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학생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고, 체벌 대상자로 하여금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교육적 효과를 저해하거나 통제와 권위에 수동

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2011. 3.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는 의견을 표명하여 체벌의 인권침해성 및 비교육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 가.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2014. 10. 27.(월) ○○고등학교 2학년 교무실(3층)에서, 피조사자가 과일(단감)을 깎고 있던 식칼을 사용하여 2회에 걸쳐 학생들(4명)을 때린 행위는, 학생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초 1회에는 칼등으로 학생들의 팔을 때려 일부 학생들(○○○, ○○○)의 팔을 멍들게 하고, 2회에는 칼날로 학생들의 허벅지를 때리는 과정에서 한 학생(○○○)의 오른편 허벅지 안쪽을 베어상처를 입힌 것은, 학생들의 신체를 훼손한 것으로서 이는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로 판단됩니다.

## 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고등학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그사안 발생일 다음날인 2014. 10. 28.(화) 16:00경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 등은 그 다음날인 29일(수) 취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사안을 보고 해야 학교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등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데, 학교장이 사고 발생 당일 보고받지 못함으로써 ○○고등학교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그러한 조치들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직접적인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당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당한 후 적 절한 보호조치 등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 므로, 사건 발생 당일 학교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그 다음날 보고된 다음, 이틀 후에야 피해학생들에게 보호조치 등을 한 것은, 피해학생 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 10. 27.(월) 16:00경 ○○고등학교 3층 2학년 교무실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책임은 1차적으로는 가해자인 피조사자에게, 2차적으로는 해당 사안을 목격한 교사 ○○○, 치료를 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조사자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보건교사 ○○○, 학생이 다쳤다는 것을 사안 발생 당일 알게 된 담임교사 ○○○ 등에게 각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조사자가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을데리고 병원 진료를 받게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다.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부재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칼은 위험한 물건이며, 특히 식칼(부엌칼)은 과도 등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 10. 27.(월), ○○고등학교 2학년 교무실에서 피조사자는 처

음에는 칼등으로, 두 번째는 칼날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체벌하였는데, 당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행위를 함에 있어 학생의 신체를 훼손하려는 의도 나 목적이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조사자는 2014. 3. ~ 4.경까지 산업용 XL파이프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는 등 체벌을 해 온 것을 보면, 학생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피조사자가 학생을 체벌하고자 할 때 별다른 인식 없이 주위에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체벌을 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4. 10. 27.(월) 피조사자가 당시 주위에 식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별다른 인식 없이 사용하여 체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평소 피조사자는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낮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조사자를 비롯하여 교사들은, 평소 교무회의 등에서 체벌이 금지된다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당시 상황이 체벌이라고 느꼈다면 당연히 말렸을 것인데, 장난식으로 하는 것이어서 말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 기록 시, '장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칼을 이용하여 체벌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장난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체벌'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고,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부족한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도, 2014. 11. 5.(수), 2학년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 "찌질하게 몇 대 맞았다고 신고하고 징징짜는 꼬라지", "좋은 말로 해서 다 들으면 그게 학생이냐구요"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체벌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 역시 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교사를 비롯하여 학생들에게,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체벌은 폭력이고, 학교에서는 어떠한 체벌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 향후 다시는 위와 같은 체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Ⅲ. 결론

학교에서 교사가 칼(식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체 벌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하고 심각한 행위이고,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학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해당 학교에서는 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체벌에 대한 인권감

수성이 낮은 것은 위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라북도 각급 학교에서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2014. 11. 26.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서명)

[붙임: 관련규정]

#### 가. 「세계인권선언」

#### 제26조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 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 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아동궈리협약 |

####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마. 「초・중등교육법」

-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다.
-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포
- 7. 학생인권교육
-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 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 한 경우
  -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 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아. 「○○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46조(벌의 종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은 할 수 없으며,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 같은 덕벌(德罰)로 대체하고, 지벌, 덕벌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